도정질문 서면 답변서

(교육사회위원회 김 광 수 의원)

건설방재국
기반건설과

1.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연구용역 관련

□ 학술·기술적 연구용역 현황

연 구 완료일	연 구 내 용	소요예산 (천원)	연 구 기 관	비 고
계		1,765,250		
'01. 4월	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	76,600	삼성에버랜드	
'01. 8월	문화재지표조사	2,900	충 북 대 중원문화연구소	
'02.12월	유원지계획 및 통합영향평가	971,000	삼안건설기술공단, (주)한경	기 술 용 역
'02.12월	유원지사업 도시계획실시설계	599,800	동명기술관리공단, (주)대원ENG	기 술 용 역
'05. 2월	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민자유치 타당성조사	41,700	한국산업연구소, (주)유신코퍼레이션	
'06. 2월	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	20,000	한국개발연구원	
'08. 5월	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	53,250	충북개발연구원	

□ 추진근거 및 소요예산

○ **밀레니엄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은 17억 65백만원임**

-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6, 7호에 의한 것이며 당초계획 반대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2회 실시하여 1억 3천만원 소요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 및 통합영향평가

를 위한 용역에 15억 71백만원 소요

-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표조사와 건설기술 관리법,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65백만원 소요

○ 예산집행된 연구용역은 사실상 **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인가 등 관계법령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비용**이 대부분임

2. 충북개발공사의 추가출자 관련

□ 출자현황 및 근거

○ 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

> ① 공사의 자본금은 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
>
> ② ...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...

○ 충북개발공사 설립시 도에서 출자가능한 자본금 529억원에 대한 수권자본금을 2,000억원으로 함

⇒ **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함 (상법 제289조 제2항)**

□ 충북개발공사 증자계획

○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재산 772억원(감정평가액) 현물 출자후 총 납입자본금은 1,301억원으로 증액,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범위는 699억원까지 가능함

○ 향후 자본금 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 등을 통해 증액 조정토록 하겠음

3. 국제 웨딩빌리지 사업 기본계획 용역 반영 관련

□ 기본계획 연구용역 설계에 반영된 배경 및 경위

○ 배 경

- 밀레니엄타운 자체의 收支均衡 가능 체제 구축 필요

• 전체 면적의 52%를 차지하는 생태공원 등 공익시설은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함

⇒ **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어려움, 특정지역 주민의 수혜시설 관리·운영을 전체도민 부담으로 충당하는 문제점**

-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 및 환경성에 합치

• 밀레니엄타운 자체 收支均衡 체제 구축 가능, 건물특성상 건폐율 20%를 유지하며 대부분 녹지로 구성

• 투자되는 613억원 전액이 외자로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

⇒ **유원지임을 감안,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**

- 새로운 웨딩문화를 이끌어 가는 문화콘텐츠로 육성발전 가능

• 국내 최초의 시설로 단순한 예식장이 아닌 국내 웨딩문화를 이끌어가는 웨딩산업의 Mecca로 발전 가능

⇒ **미개척분야인 웨딩관련 국제 세미나·웨딩 쇼·회의 등 유치, 고품격의 중세 유럽풍의 웨딩홀은 영화 등 촬영지로 활용 전망**

○ 경 위

- (주)끼트레이딩으로부터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제안을 받아 청남대 등 청주시 근교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 검토('08. 2 ~ 5월)

- 용역안 최종보고 수정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제시('08. 4. 1)

보고 및 참석자 발언 내용을 검토하고 개발공사, 청주시 등과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4월말 한 검토하여 보고요망(도지사)

- 관계기관과 재협의(보완 등) 필요, 용역 일시중지('08. 4. 2 ~ 5. 6)
- 국제웨딩빌리지 제안업체의 사업설명회 개최('08. 4. 27)
- 검토단계를 거쳐 충북개발연구원에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포함 의뢰('08. 5. 7)
- 밀레니엄타운 용역 결과보고에 웨딩빌리지 사업 반영('08. 5. 14)
- 웨딩빌리지가 포함된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확정 ('08. 5. 21)

4. (주)끼트레이딩과의 MOU체결 관련

□ 협약체결('08. 8. 29) 개요

○ 우리도가 (주)끼트레이딩이 제안한 국제 웨딩빌리지 사업구상 내용과 외자 유치사업에 동의하고,

○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한다는 내용의 선언적인 기본협약 체결

□ 민자유치의 필요성

○ '01년 행안부의 투·융자 심사 시 민간투자자를 선정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

○ '02, '05년 감사원 감사시 민자유치와 사업규모 조정 지적

○ '07년 도의회 행정감사 시 재원대책 마련 및 조기 착공을 시정요구

○ '08.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투·융자 심사 재 승인을 받기 위하여 민자 유치에 대한 노력과 가시적 실적 필요

□ 외자유치 여건 조성

○ 현재 하우스·채플 웨딩문화가 세계적 특히, 아시아권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유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음

○ 우리도 외에 경기도, 제주도에서 본 사업의 유치 경쟁중에 있었고, 사업제안 업체에서의 외자유치에 필요로 하여 현 시점에서 가능한 기본협약 체결

□ 이제 더 이상 밀레니엄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임

○ 지역 주민과 일부 민간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시 요구사항 및 토지 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절실함

○ 그동안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특성상 사업성 결여로 민간 투자자가 없었던 점을 볼 때,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모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됨